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결로 종결 결정 시 의결서에 소수의견 기재 등〉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86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등에 「청탁금지법」 적용	4
2.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에 관한 신고사건 종결 시 ‘불이침 이유서’ 작성 ..	11
3.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종결 결정 시 그 의결서에 소수의견 기재	15
4. 불이침 이유서와 의결서 열람 및 등사 허용	20
5.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25

I. 제안경위

1. 제출자 : 김남근의원 등 15인
2. 제출일 : 2024. 10. 7.
3. 회부일 : 2024. 10.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자인 대통령이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고가의 금품등을 수수(收受)하고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만 함)」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인 대통령의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나 제9조의 신고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종결처리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해석의 위법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논란으로 인한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선물등의 수수행위로 인한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선물에 관해서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다목과 「공직자

윤리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와 제9조를 적용하여 청탁 금지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고자 함.

또한, 최근 고위공직자인 대통령이 그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면서도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인에 대한 사실관계는 물론, 금품등 수수 과정에서의 직무관련성 사실관계, 제20조의 대통령실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절차 담당자와 담당자가 제9조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 등 신고사건과 관련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수사·조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종결처리를 하여, 공직자들의 청탁금지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제12조)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더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9조의 위원회에서 위 사건에 대한 종결 처분을 의결하면서 찬성과 반대의 치열한 의견대립이 있었지만, 최종 의결서에는 반대의견이 기재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사건 종결 처분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등 신고사건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한 불이첩 이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종결처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경우에는 의결서에 찬·반의 의견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며, 신고인이 이를 열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신고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법리상 종결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 기초적인 조사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있고, 공직자의 공직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고가의 금품등의 수수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므로,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8조제1항의 고가의 금품등의 수수를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제14조의2, 제22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등에 「청탁금지법」 적용

-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본문에서 “「청탁금지법」”이라 함)의 규율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2(대통령 등이 외국인에게 받은 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신고에 관한 특례)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등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다목에도 불구하고 제8조와 제9조를 적용한다.

- 현행법 제8조상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공직자들의 배우자는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됨.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며, 특히, 동 조항 제8호에서는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¹⁾

동 법 제9조는 예외적 수수가 허용되지 않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해 공직자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²⁾

-
-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현행법은 “금품등”의 정의를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②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③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음.³⁾

□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15조는 공무원등 또는 그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선물은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⁴⁾

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다목은 대통령 선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로, 같은조제1호는 대통령선물을 ‘대통령기록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며,⁵⁾ 제3조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⁶⁾

- 대통령기록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상

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선물의 가액)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 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 가. 대통령
 -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2. “대통령기록관”이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개인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을 말한다.
- 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소유권)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이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음.

<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 요건」 >

종류	요건	내용
다목 전문 (국민 관련)	주체	대통령, 대통령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 인수위 (대통령 가족은 규정에 없음)
	상대방	국민
	직무 관련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객체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다목 후문 (외국인 관련)	주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
	상대방	① 외국 ② 외국인
	직무 관련성	① 외국으로부터 받은 때 불필요 ②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때 필요
	객체	10만원 또는 100USD 이상 ⁷⁾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다목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등’에 「청탁금지법」 제8조와 제9조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다른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려는 것임.

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선물의 가액)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 현행 법체계는 금품등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예외 사유로는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선물에 대한 정의 및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공직자윤리법」 제15조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30조 벌칙 규정에서도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윤리법」, 「대통령기록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사항에 대해 다시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여 다시 금지하는 특례를 두는 입법 방식임.

○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선물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안과 같이 「청탁금지법」 예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 외에, 법률은 복잡하지 않고 가능하면 단순하게 기술되어야 한다⁸⁾는

8) 「법제기준과 실제 2024」,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p.22

점에서 「공직자윤리법」,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선물의 허용 여부를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율 필요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에 관한 신고사건 종결 시 ‘불이첩 이유서’ 작성

-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고위공직자”⁹⁾와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등 신고사건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처리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한 ‘불이첩 이유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첩 이유서 작성의무)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건 중 「공직

-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 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u>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에 관한 사건을 제14조 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인한 사실관계의 내용과 이첩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한 불이첩 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
--	--

□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¹⁰⁾ 신고 내용이 명백히

- 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거짓인 경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고를 종결할 수
있되, 종결 시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청탁금지법」 신고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한 사항을 포함한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신고사건을 이첩
또는 종결하는 등으로 처리하고 있음.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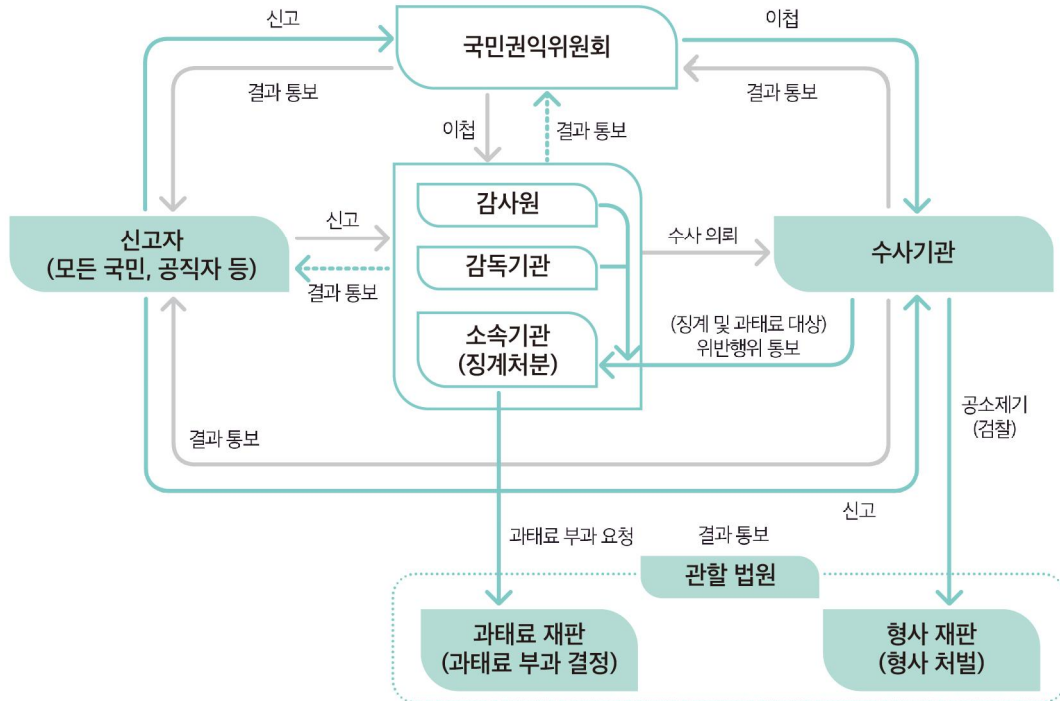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종결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2조(신고의 심사) ①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고 및 처리 절차 체계도>

신고 및 처리 절차 체계도



□ 개정안은 실무적으로 운용되던 신고심사의견서와 달리 불이첩 이유서 작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권익위가 불이첩 이유서 작성·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고, 안 제14조의2제3항의 ‘열람 및 등사’ 제도와 함께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그 종결 결정의 신중하고 투명한 처리를 담보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를 긍정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도 신고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한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종결 결정 시 그 의결서에 소수의견 기재

□ 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¹³⁾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개정안 제14조의2제1항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에 관한 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의결서에 이와 관련한 다수의견과 함께 소수의견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의2(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첩 이유서 작성의무)</u>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제1항에 따른 종결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의결서에 이와 관련한 다수의견과 함께 소수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현행법령은 신고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종결 결정을 하는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서에 소수(반대)의견 기재여부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¹⁴⁾

□ 개정안은 모든 종결 사건이 아닌 ‘위원회의 의결’로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에 관한 신고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의결서에 다수의견과 함께 소수의견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종결 결정이 전원 찬성이 아님을 나타냄과 동시에 소수의 의견도 기록으로 남긴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기재하고 있으며,¹⁵⁾ 금융위원회는 의사록에 소수의견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⁶⁾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종결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15) 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수의견 기재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은 부존재함

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의 제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주요 발언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는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임을 이유로 속기록을 비공개하고, 합의 회의록에 의원들 간 구체적인 의견 교환내용은 생략한 채 합의의 결과만 간략히 기재하였으나, 이후에는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원별 발언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합의 회의록에 기재하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하고 있음.¹⁷⁾

○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소수의견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있음.

□ 소수의견의 기재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안전보장회의, 감사원, 국회 등은 소수의견 기재에 대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음.¹⁸⁾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합의 기능의 왜곡을 막기 위하여 ① 위원명, ② 개인 사생활 또는 사업자 영업비밀 관련 사항, ③ 기타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은 제외하고 작성

18) 「법원조직법」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참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 ③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8조(선고의 방식) 결정을 선고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되, 필요한 때에는 다른 재판관으로 하여금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재판장은 선고 시 이를 공개하고 그 의견을 제출한 재판관으로 하여금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회의 결과의 보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안보회의의 회의록에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분(副本)을 위원에

□ 소수의견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는

- 소수의견 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에 비취 한점 의문 없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고, 소수의견이 어떤 내용이든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그것이 법과 원칙에도 부합하며, 소수의견을 비공개할 경우 오히려 더 큰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거나 결정의 신뢰성이 훼손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 소수의견을 비공개하자는 입장은 중요한 사안의 소수의견 공개 시 국론분열 및 사회혼란 가능성이 있고, 소수의견 개진자에 대한 혹독한 비판여론 또는 테러나 협박 위협 등으로 소수의견 개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개정안은 소수의견의 의무적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수의견의 소극적 표현 등의 불이익과 소수의견의 공개를 통한 알 권리의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고,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게 배부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13조(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 ① 심의실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9. 의결 내용(소수의견을 포함한다)

「국회법」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적어야 한다.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은 의결서를 통해 외부에 통일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다수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소수의견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불이첩 이유서’와 ‘의결서’ 열람 및 등사 허용

- 개정안은 신고인이 신청하는 경우 불이첩 이유서 및 의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4조의2(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첩 이유서 작성의무)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건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에 관한 사건을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인한 사실관계의 내용과 이첩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한 불이첩 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제1항에 따른

	<u>종결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의결서에 이와 관련한 다수의견과 함께 소수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u> <u>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의 불이첩 이유서와 제2항의 의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u>
--	---

□ 개정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에 관한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경우 불이첩 이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종결처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경우 의결서에 소수의견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불이첩 이유서 및 소수의견이 기재된 의결서 작성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고인의 신청 시 불이첩 이유서 및 의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려는 개정안 제14조의2제3항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에 관한 사건진행 및 종결에 대한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고자의 사건처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신고자가 종결 사유를 통지받고는 있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사유¹⁹⁾가 아닌 구체적인 내역은 통보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불이첩 이유서 또는 소수의견이 기재된 의결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게 되면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재신고를 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밟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불이첩 이유서 또는 소수의견이 기재된 의결서의 열람 및 등사를 통해 권익위의 불이첩 또는 종결 처분에 대한 신고인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권익위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기관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열람·등사에 관한 입법례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 「형사소송법」 21)등이 있음.

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종결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2.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21)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불이첩 이유서 또는 의결서에는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파악된 개인정보, 수사·소송, 기업의 경영상 비밀과 같은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협조자 등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및 민감 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피신고자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권이 없는 등으로 피신고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신고자에 대한 법익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 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있으므로, 개정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열람 및 등사의 허용요건과 관련하여,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는 관련 불이첩 이유서 또는 의결서의 내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5조 등 관련 입법례를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신장식위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4)은 권익위에 접수된 부패 신고사항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5.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 개정안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8조제1항의 고가의 금품등의 수수를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벌칙) ① ~ ③ (생략)	제22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④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제14조의2의 고위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위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u>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생략)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	⑤ ----- -----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
함한다) 또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 한다. 3. (생략) ⑥·⑦ (생략)	----- -----. 3.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는 제반 규정을 두고 있음.²²⁾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 그리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²³⁾ 공직자등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등 사실을 안 경우 신고 및 반환·거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²⁴⁾

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한방식에 있어서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공직자등이 배우자의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신고 의무를 부담토록 함으로써 법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고 신고·반환 의무 등을 부여한 것은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 및 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²⁵⁾

○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9조제1항제2호 중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 등 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배우자를 통한 금품등 수수의 우회적 통로를 차단하는 한편, 신고라는 면책 사유를 부여’한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2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5) 법률 제정 당시 논의 과정(제331회 국회 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2015년 3월 3일)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을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일부 위원의 지적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을 우회해서 어떤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막아 보자라는 취지’이며, ‘배우자가 돈 받은 것이 독자적으로 어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도 상정을 할 수가 있다’면서 배우자에 대한 이 법 적용 필요성을 주장함.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²⁶⁾한 바 있음.

□ 그런데,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및 자신과 배우자에 관련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이와 같이 현행법은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위반한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현행 배우자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 하려는 것임.

□ 배우자는 공직자등과 일상을 공유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거나 동일한 이해관계 속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임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청렴성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 나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는 위의 결정문에서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과

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등 결정(2016.7.28. 선고, 2015헌마23)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함.

□ 다만,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금품 수수 등 행위에 대해서 제8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제8조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자등 본인에 대해서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별할 수 있는 경우에만 형벌이 적용되는 구조임.

[표 3] 현행법의 공직자등 금품수수 등 관련 처벌 규정

처벌 대상	처벌 조항
▪ 현행법 제8조제1항 위반 - <u>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u>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자 ※ 신고·반환·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 제22조제1항제1호 -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 현행법 제8조제2항 위반 - <u>직무와 관련하여</u>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자 ※ 신고·반환·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 제23조제5항제1호 ▪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u>과태료</u>

○ 대부분의 개정안²⁷⁾과 같이 직무수행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행위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판단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직무수행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무 관련성 여부가 공직자등에 비해 더욱 모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기관의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가 형벌권이 오·남용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종합적으로,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청탁 및 금품수수 등에 대해 실효적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직무관련성 요건의 모호성으로 인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 및 일반인에 대한 규제 확대 등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면밀히 비교형량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수수 등 부패실태 및 심각성, 국민인식 변화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의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등 과잉입법 및 연좌제 금지 위반 등의 위헌 소지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27) 한병도의원안 제외 5개 개정안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10